

대통령령 제 호
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3호 중 “혈액·체액·분비물·배설물이”을 “환자 치료에서 발생한 체액·분비물·객담(혈액이 함유되지 않은 것), 혈액·체액·분비물·객담·배설물 등이”로 한다.

별표 2 비고 4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비고 4. 일반의료폐기물에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1항[별표2]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검진에서 발생한 혈액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폐기물은 제외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